

국회에서 의결된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박 상 기  
법무부장관

●법률 제15753호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揭記된”을 “규정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일본식 한자어 ‘게기(掲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